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19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0497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한○○, 이○○

피 고 1. ○○특별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김○○

2. ○○특별시 ○○구청장

3. ○○특별시 ○○구청장

4. ○○특별시 ○○구청장

5. ○○특별시 ○○구청장

6. ○○특별시 ○○구청장

7. ○○특별시 ○○○구청장

8. ○○시장

9. ○○군수

10. ○○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변 론 종 결 2023. 7. 21.

판 결 선 고 2023. 9. 22.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이 제조하여 고객 시승용, 본·지점 운행용 등 자체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들 총 5,40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해 취득세 등 합계 14,554,671,5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승계취득한 것이 아니고 원시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별지 1 목록의 '경정청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들에 대하여 같은 목록의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들은 별지 1 목록의 '경정청구 거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각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별지 1 목록의 '조세심판 청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8. 위 청구를 각 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19

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의 대상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이하 '차량 등'이라 한다)인 경우 '승계취득'한 때에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원시취득'한 때에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제조·완성한 때 이를 원시취득한 것이고 이후 이를 등록 또는 사용한 때에 원시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원시취득한 이 사건 차량을 등록하여 사용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을 또 다시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취득'의 개념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은 지방세법상의 독자적 개념이 아니라 민법상 개념을 차용한 것이고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취득과 동일한 개념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위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에 관하여 구체적인 과세 대상이나 취득 유형에 따라 다양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본문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 취득'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사실상 취득한 경우도 지방세법상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민법상의 승계취득 개념을 확장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단서는 취득의 대상이 차량 등인 때에는 원시취득을 제외한 승계취득의 경우에만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19

같은 항 본문과 반대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의 범위를 축소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법상 원시취득은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물건의 제조·신축 완료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 반면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을 위한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이 필요한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므로, 사실상 취득이라는 개념은 승계취득에만 상정할 수 있고 원시취득에는 상정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을 '등기·등록을 마친 원시취득'과 '등기·등록을 마치지 않고 사실행위만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시취득'으로 구분하여 사법상 원시취득 개념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원시취득 개념을 창설하고 이중 '사실행위를 통한 원시취득'을 '사실상 취득' 개념에 포함시키는 해석을 함으로써,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단서 규정은 취득의 대상이 차량 등인 경우에 '원시취득'을 '취득'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아니라 '사실행위를 통한 원시취득'만을 취득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므로 '등기·등록을 마친 원시취득'은 여전히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그릇된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등록하여 사용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19

이 사건에서는 차량의 제조자 등 원시취득자가 해당 차량을 판매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해당 차량에 관한 등록을 마친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방세법 제7조에서 정한 과세대상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지방세법 제7조의 과세대상 등

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에서의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규정하여, 취득세에서 취득의 방식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면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취득세에서의 취득으로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7조의 취득을 살핌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을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19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본문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1] 등 참조). 즉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본문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담하여야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등기·등록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원시취득자(소유자) 또는 승계취득자(양수인)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 등에 관한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의 범위를 통상적인 민법상의 소유권 취득보다 넓혔다고 볼 수 있다.

라)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단서는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항 내에서 본문과 단서의 관계는 보통 본문은 원칙을, 단서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고, 단서는 본문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에 관한 판시이나, 위 규정의 내용은 본문에서 인용하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과 대부분 동일하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19

78536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단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6조 제1호에 따른 취득의 범위를 축소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본문에서 사실상 취득의 경우로 넓힌 과세대상 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이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취득한 경우'를 규율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등 중 일부인) 차량 등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인 경우, 해당 차량 등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한다.

나아가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은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한 점,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단서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판매회사나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 등을 제조·조립·건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자 등으로부터 차량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는 점[2], 이러한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대법원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란 차량 등의 제조자 등이나 판매회사(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에 대응하는 소비자 또는 수요자를 의미하므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 등을

2) 지방세법은 1973. 3. 12. 법률 제2593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단서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최초로 규정하였는데, 위 개정 당시 외국산 고급 승용차등에 대하여 세율을 인상한 점(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법률 제정·개정 이유 참조)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국내의 자동차 제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입법된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19

그 제조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6426 판결[3]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단서는 '차량 등의 제조자 등이 차량 등을 제조·조립·건조하여 완성(원시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실수요자에게 인도하거나 실수요자로부터 계약상 잔금을 지급받으면(승계취득), 위 승계취득을 과세계기로 삼아 해당 승계취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앞서 본 각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이에 관한 해석 내용을 종합하면, 차량 등의 제조자 등이 차량 등을 제조하여 원시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상 취득으로서(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이지만(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다만 차량 등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소비자 또는 수요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차량 등의 제조자 등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단서), 예외(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차량 등의 제조자 등도 취득세를 부

3)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6항 등에 관한 판시이나, 위 각 규정의 내용은 본문에서 인용하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과 대부분 동일하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19

담하게 된다. 따라서 차량 등의 제조자 등이 제조한 차량 등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 승계취득시킨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등록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즉 지방세법에 따른 차량 등의 제조자 등에 관한 과세체계는, 차량 등의 제조자 등이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채 차량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차량 등을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여 우선 이에 관한 취득세 부과를 유보하였다가, 제조자 등이 차량 등을 실제로 판매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종국적으로 면제하되 제조자 등이 이를 판매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 이를 과세계기로 삼아 제조자 등에게 차량의 '원시취득'에 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다시 말해 제조자 등이 차량 등을 등기·등록한다고 하여 이를 종전의 원시취득과 별도의 '취득'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유보되었던 과세의 계기로 삼을 뿐이다).

이러한 결론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본문의 문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는 것인데, 그 문언해석상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한 경우는 당연히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전제한 것인 점,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가 취득세의 납세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량의 등록을 과세계기로 삼는 지방세법의 입법태도를 방증하는 것인 점, 차량의 제조자 등이 자신 고객 시승용, 본·지점 운행용 등 자체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앞서 본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단서의 입법 취지(판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19

회사나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 등을 제조·조립·건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자 등으로부터 차량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음)에 부합하지 않는 점, 차량 등의 제조자 등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것은 이를 실수요자가 아닌 자신이 소유할 의사임을 명확히 한 것이고 제조자 등도 회계자료에 이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할 것임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그에 관한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과세 공백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와 같은 차량의 제조자 등이 자신이 제조한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단서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황○○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19

판사 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19

< 별지 1 >

처분 목록

연번	피고	경정청구세액 (단위, 원)	경정 청구일	경정청구 거부일	조세 심판 청구일	조세심판원 사건번호
1	○○특별시 ○○구청장	13,756,229,920	2020.11.25.	2021.1.14.	2021.4.14.	
2	○○특별시 ○○구청장	11,110,320	2020.12.2.	2021.1.14.	2021.4.14.	
3	○○특별시 ○○구청장	194,725,080	2020.11.25.	2020.12.30.	2021.4.2.	
4	○○특별시 ○○구청장	8,544,550	2020.11.30.	2021.1.21.	2021.4.21.	
5	○○특별시 ○○구청장	14,712,840	2020.12.1.	2021.1.21.	2021.4.21.	
6	○○특별시 ○○구청장	5,033,530	2020.11.27.	2021.1.21.	2021.4.21.	
7	○○특별시 ○○○구청장	5,449,280	2020.11.30.	2021.1.25.	2021.4.21.	
8	○○○도 ○○시장	50,356,000	2020.12.1.	2021.1.19.	2021.4.14.	
9	○○○도 ○○군수	53,875,800	2020.12.1	2020.12.9.	2021.3.11.	
10	○○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1]	237,393,960	2020.12.7.	2021.2.2.	2021.4.30.	

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19

< 별지 2 >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③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④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끝.